

예산총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6,746,855	7,402,406
일반회계	231,516,107	6,945,483
특별회계	15,230,748	456,922
기타특별회계	15,230,748	456,9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7,011	14,0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5,682	10,370
주차장특별회계	8,297,642	248,92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81,727	20,452
기반시설 특별회계	14,178	425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5,424,508	162,73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84,21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번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 보고한다.